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4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수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부담금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안 별표 1)

2)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안 별표 2)

다. 긴급한 재해복구 등 필요시 면제를 정함(안 제4조)

라. 부과·징수를 정함(안 제5조)

마. 다수의 원인자를 정함(안 제6조)

바. 과오납금 반환 등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2. 11.~3. 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참고조례안 입법컨설팅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제공자의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
2.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3.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음

제3조(파손자의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파손자"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 제2조 준용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출기준에 따르며, 누수량 및 퇴수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름
3. 급수차의 사용경비: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름

4. 도로결빙 방지비용: 차량경비, 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함
5.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 차량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에 따름
6. 홍보비: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든 모든 비용을 합함

제4조(면제) 군수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부과·징수) ① 군수는 원인제공자와 파손자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을 먼저 부과·징수한 후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도공사등은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다수의 원인자) ① 군수는 파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당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을 분할하여 산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7조(과오납금 반환 등)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수도공사등에 든 비용과 다르거나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상수도 급

수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제2조제3호 관련)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1. “단위사업비”란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 = 순자산/시설용량
      1) 순자산: 거창군에서 건설한 수도시설(원수,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을 말한다)로서 거창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른 금액
      2) 시설용량: 군 자체 정수용량과 광역상수도 광역배분계획량의 합
2. “수돗물사용량”이란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을 말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에 실제 들어간 공사비용을 말하며,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고 비용도 그에 따른다.
4. 단위사업비는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5.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순자산과 시설용량을 재적용한다.

[별표 2]

누수량 및 퇴수량 산출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sqrt{2gh}$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CA\sqrt{2gh}$ × 3600

= 0.64 × $\frac{a}{10000}\times\sqrt{2\times9.8\times10p}\times3600$ = $3.2256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hr)
C = 유량계수(Ca × Cv)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therefore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 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출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